

협회 일보



제781호

2023.3.16(목)

지방세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령 14일 공포, 즉시 시행

◇ 기업의 세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 등 경제 활력 적극 지원

법인지방소득세 세율 0.1%p 인하

구분	현행		개정	
법인지방 소득세 세율	2억원 이하	1%	2억원 이하	0.9%
	2~200억원	2%	2~200억원	1.9%
	200~3,000억원	2.2%	200~3,000억원	2.1%
	3,000억원 초과	2.5%	3,000억원 초과	2.4%

기업혁신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 강화

구분	현행(감면율)	개정							
기업 부설 연구소	<table border="1"> <tr> <td>대기업, 중견기업</td> <td>취득세·재산세 35% ※ 대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限</td> <td rowspan="3">신성장·원천기술 10%p 추가 감면</td> </tr> <tr> <td>초기중견</td> <td>취득세·재산세 50%</td> </tr> <tr> <td>중소기업</td> <td>취득세 60%·재산세 50%</td> </tr> </table>	대기업, 중견기업	취득세·재산세 35% ※ 대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限	신성장·원천기술 10%p 추가 감면	초기중견	취득세·재산세 50%	중소기업	취득세 60%·재산세 50%	감면 연장 및 확대 ※ 신성장·원천기술 15%p 추가 감면(현행 대비 + 5%p)
대기업, 중견기업	취득세·재산세 35% ※ 대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限	신성장·원천기술 10%p 추가 감면							
초기중견	취득세·재산세 50%								
중소기업	취득세 60%·재산세 50%								

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도입

-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'재해손실세액차감' 제도 신설

-(차감 계산식) 법인지방소득세액-차감액(법인지방소득세액 × 「법인세법」 상 자산상실비율)

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·이전 기업 감면 신설

-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·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·사업장 설치 및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·재산세 특례* 신설

* (창업·사업장신설·사업장이전 기업) 취득세 100%, 재산세 5년간 100%(이후 3년간 50%), (사업전환기업) 취득세 50%, 재산세 5년간 50%